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두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8

발의년월일 : 2016년 6월 1일
발 의 자 : 진두생, 김현기, 김제리, 남창진, 양준욱, 장흥순, 김혜련, 유동균, 조규영, 이신혜, 주찬식, 최호정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고농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나.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대상 물질로 오존(O_3)을 추가함(안 제2조)

다.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 및 기준을 상위법령과 통일(안 별표 1)

라.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안 별표 2)

마.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PM-10, PM-2.5) 및 오존(O_3)농도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미세먼지(PM-10)”란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4. “미세먼지(PM-2.5)”란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5. “오존(O_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6.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특별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7. “오존(O_3) 농도”란 서울특별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예보 및 경보방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 및 오존의 예보·경보의 내용을 방송사·신문사 등 보도기관 및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대기오염농도를 언제든지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기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예보의 내용과 기준)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의 내용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시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오존 경보는 “주의보·경보·중대경보”로 구분하며, 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시장은 경보 발령 시, 별표 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대기오염 개선노력) 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① 시장은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도간 협력) 시장은 경보 발령에 따른 시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시장은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의 내용 및 기준(제4조 관련)

가. 미세먼지

(단위 : $\mu g/m^3$)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대상 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2.5)	0~15	16~50	51~100	101 이상
행동 요령	민감군	-	· 실 외 활 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비고〉

1. 예측·발표 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나. 오존

(단위 : ppm)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대상 물질	오존 (O_3)	0 ~ 0.030	0.031 ~ 0.090	0.091 ~ 0.150	0.151 이상
행동 요령	민감군	-	· 실 외 활 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가급적 실내활동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비고〉 1. 오존의 농도산정 시간기준은 1시간 기준

2. 예측·발표 기간은 매년 4.15일부터 10.15일까지로 한다.

3.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별표 2〕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6조 관련)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 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 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PM-2.5 시간평균농도가 50㎍/㎥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9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오존농도가 0.12 ppm 이상일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미만일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오존농도가 0.3 ppm 이상일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0.3ppm 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중대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오존농도가 0.5 ppm 이상일 때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3ppm 이상 0.5ppm 미만일 때는 경보로 전환

〈비고〉

1. 해당 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농도 또는 PM-2.5의 권역별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오존 농도는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오존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별표 3〕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7조, 제8조 관련)

가. 미세먼지

경보단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 · 체육시설 · 고궁 · 터미널 ·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 · 정차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권고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 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 · 체육시설 · 고궁 · 터미널 ·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 · 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명령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나. 오존

경보단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자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함) 다.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마. 공원 · 체육시설 · 고궁 · 터미널 ·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바.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자제 나.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노천 소각금지 라.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다. 유치원·초등학교 실외 활동 제한 라.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제한 마.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바. 공원 · 체육시설 · 고궁 · 터미널 ·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사.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권고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대경보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금지 다.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경보지역 내 차량 통행 금지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명령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대기오염 예·경보 대상물질을 추가하고, 예·경보 기준을 상위법령과 통일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추가비용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회 진두생 의원